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 (백숭아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6516 발의연월일: 2024. 12. 16.

발 의 자: 백승아 · 이용우 · 이병진

김준혁 • 김 윤 • 박해철

박희승 • 한창민 • 박용갑

강준현 · 정준호 의원

(11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지난 2024년 12월 3일 윤석열 대통령의 반헌법적인 계엄령을 통해현행 계엄법은 계엄 선포와 해제 과정에서 국민의 기본권 보호와 민주적 의사결정 절차가 충분히 보장되지 못한다는 사실이 드러났음. 특히, 계엄 선포 이후 군 병력에 의해 국회의 권한이 제한될 수 있다는점이 확인되었으며,계엄 해제 이후에도 계엄 관련 지휘·감독 사항이명확히 보고되지 않아 반헌법적·불법적 권력 남용이 있었다 하더라도 그 사실관계 확인이 어려운 구조적 한계가 드러났음.

이에 본 개정안은 계엄의 결정 과정에 국무회의 의결을 의무화하여계엄 결정 대한 엄격성을 부여하고, 계엄 해제 이후 대통령 및 관련행정기관이 계엄 기간 중의 지휘·감독 사항과 사무 내용을 30일 이내에 국회에 보고하도록 의무화하여 계엄 시 발생한 권력의 오남용을

바로잡을 수 있도록 하고자 함.

아울러 계엄 상황에서 국회의원이 체포 또는 구금된 경우에도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하여 국회의원의 불체포특권을 실질적으로 보장하고, 국회의 민주적 계엄 해제 요구가 반헌법적이고 불법적으로 가로막히는 일이 없도록 하고자 함(안 제2조제5항, 제11조의2, 제13조).

계엄법 일부개정법률안

계엄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2조제5항 중 "심의를"을 "심의 및 의결을"로 한다.

제11조의2를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- 제11조의2(계엄 시 지휘·감독 등에 대한 국회 보고) 대통령, 국방부 장관, 계엄사령관 및 각 행정기관의 장은 계엄이 해제된 날부터 30 일 이내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 관련 지휘·감독 사항 및 사무 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 한다.
 - 1.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 및 국방부장관의 지휘·감독 사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 국무회의 심의 결과
 - 2.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지휘·감독 사항
 - 3.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 특별조치 사항
 - 4.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, 확인서, 사진 등 증명자료
 - 5. 제10조의 비상계엄하 군사법원의 재판 사항
 - 6. 그 밖에 계엄 선포 이후 각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사무 내용 및 지휘·감독 이행 사항

제13조의 제목 중 "불체포특권"을 "불체포특권 등"으로 하고, 같은 조제목 외의 부분을 제1항으로 하며, 같은 조에 제2항을 다음과 같이 신

설한다.

② 계엄사령관 및 행정기관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회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한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체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회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.

부 칙

이 법은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신・구조문대비표

현 행	개 정 안
제2조(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) ①	제2조(계엄의 종류와 선포 등) ①
~ ④ (생 략)	~ ④ (현행과 같음)
⑤ 대통령이 계엄을 선포하거	⑤
나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국무	
회의의 <u>심의를</u> 거쳐야 한다.	<u>심의 및 의결을</u>
⑥ (생 략)	⑥ (현행과 같음)
<u><신 설></u>	제11조의2(계엄 시 지휘·감독
	등에 대한 국회 보고) 대통령,
	국방부장관, 계엄사령관 및 각
	행정기관의 장은 계엄이 해제
	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다음
	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계엄
	관련 지휘·감독 사항 및 사무
	내용 등을 국회에 보고하여야
	<u>한다.</u>
	1. 제6조제1항에 따른 대통령
	및 국방부장관의 지휘・감독
	사항 및 제6조제2항에 따른
	국무회의 심의 결과
	2. 제8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
	<u>지휘·감독 사항</u>
	3. 제9조에 따른 계엄사령관의
	특별조치 사항

제13조(국회의원의 <u>불체포특권</u>) (생 략)

<신 설>

- 4. 제9조의2제4항의 조사서, 확 인서, 사진 등 증명자료
- 5. 제10조의 비상계엄하 군사법원의 재판 사항
- 6. 그 밖에 계엄 선포 이후 각 행정기관 및 사법기관의 사무 내용 및 지휘·감독 이행 사 항

제13조(국회의원의 <u>불체포특권</u> <u>등</u>) ① (현행 제목 외의 부분과 같음)

② 계엄사령관 및 행정기관은 국회의원을 체포 또는 구금한 경우 제11조제1항에 따라 국회 가 계엄의 해제를 요구하기 위 한 회의를 소집하는 때에는 체 포 또는 구금된 국회의원이 회 의 및 표결에 참석할 수 있도 록 즉시 조치하여야 한다.